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1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3. 6. 7.(수) 10:02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김 현 상임위원  
이상인 상임위원 (3인)

불참위원 : 없 음

---

## 제1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10시 02분 개회 】

### 1. 성원보고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세 분이 모두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국기에 대한 경례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우선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한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막중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신하게 된 것은 커다란 부담이고, 그 부담의 무게가 막중함을 새삼 절감하게 됩니다. 저희들 앞에 놓인 과제들은 하나 같이 어렵고 복잡하며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는 일 들입니다. 그러나 역풍장범(逆風張帆)이라 했습니다. 파도가 밀려들수록 돛을 높이 올리라는 선현의 말씀에 틀림이 없습니다. 국민이 법으로 위임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속하되 누락됨이 없도록, 신중하되 지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 직원들도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3. 개회선언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2023년도 제1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신임위원 인사말씀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회의 시작에 앞서 취임해서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하신 이상인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소감 한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인 상임위원

- 안녕하십니까?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5월 4일 첫 발령을 받아 근무한지 이제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간 위원회 내부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공식 석상에서의 인사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 양해를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 위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나 김효재 위원님을 중심으로 김 현 위원님 그리고 사무처 직원 분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제5기 방통위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6기 방통위에서는 구성원들과 함께 이용자 중심의 혁신적인 방송·미디어·통신정책을 마련하고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오늘 이 자리에는 바로 임명된 조성은 사무처장님도 처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하시지요.

○ 조성은 사무처장

- 지난 금요일자로 방통위 사무처장으로 보임하게 된 조성은 사무처장입니다. 이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사무처장이라는 중책을 또 제가 맡게 돼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이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김효재 직무대행님과 김 현 위원님 그리고 이상인 위원님 잘 보필하면서 제5기 방통위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제6기 방통위가 잘 출발할 수 있도록 사무처를 대표하는 사무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5. 전차 회의록 확인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2023년도 제8차, 제9차, 제10차, 제11차, 제12차, 제13차, 제14차, 제15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6. 회의공개 여부 결정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김 현 상임위원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심의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들이 있을 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기자들은 이 회의가 공개되기 때문에,

○ 김 현 상임위원

- 영상기자들이 있을 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 같아서요.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기록은 기자들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남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전체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의결 들어가기 전에, 심의 들어가기 전에 영상기자는 빠지는 것이지요? 전체 심의·의결까지 빠지지요?

○ 배중섭 기획조정관

- 예.

○ 김 현 상임위원

- 빠지고 난 다음에 취재기자만 있는 것이지요?

○ 배중섭 기획조정관

- 예, 그렇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회의 전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발언기회를 주시지요.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끝나고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김 현 상임위원

- 발언기회를 주시지요.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끝나고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 김 현 상임위원

- 발언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회의 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회의 끝내고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 현 위원과 이상인 위원의 협조를 잘 받아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몇 달 만에 공개회의가 열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발언기회를 2분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예, 그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일단 먼저 이상인 위원과 사무처장 축하드립니다. 첫째, 저희가 3월 21일 이후에 서면회의를 개최했었고, 오늘 첫 대면회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면회의 개최와 상정 안건을 6월 1일 오후 4시에 보고를 받았는데 그동안 사무처로부터 보고를 받고 회의 개최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던 관례, 기준을 벗어나서 보안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6월 1일 한상혁 위원장이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12일 신문기일이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추가로 임명되기 전까지 행정공백 방지를 위한 일상적 사무에 대해서는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대립되고 사회적·정치적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5인 체제 위원회의 구성 이후에 심의·의결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4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 위원장 직무대행 등 상임위원이 3명 있었을 때 위원회는 서면회의 3회만 개최되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인이 있을 경우 회의조차 성립되지 않아서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사와 관련된 점입니다. 지상(紙上)으로 사무처장이 발령됐다는 보도를 먼저 접했고, 그 이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급 상당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사무처장은 사무처 전체를 통괄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리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대화를 나누지 못할지언정 언론을 통해서 지상 발령을 먼저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공무원은 헌법상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됩니다. 공무원은 복무 제7장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60조는 비밀 엄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 7. 의결사항

### 가. 20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 (2023-16-042)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의결안건 가> “20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20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20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한국방송공사 등 총 34개 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세부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 주요경과입니다. 작년 9월에 2023년~2026년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해 연도 재허가 세부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4> 주요내용입니다. <가> 재허가 대상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총 34개사 141개 방송국입니다. KBS의 경우 DTV(2TV), UHD(1·2TV)이며, MBC는 UHD, SBS는 DTV, UHD입니다. 그 외 지역MBC 13개사, 지역민방 7개사, 라디오 11개사로 금년도는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가 가장 많은 연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 심사 기본방향입니다.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방송의 공익성, 콘텐츠 경쟁력, 지역방송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관련 항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심사사항을 중점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시청자 의견 공개 청취, 재허가 대상 방송국 현장점검 및 사업자 의견청취를 실시하여 국민참여 확대와 실질심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입니다.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분야별 전문가 인사 11인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방송

통신위원장이 상임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심사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심사기준에 따른 세부 심사항목과 배점을 결정하며,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 심사 평가 및 재허가 조건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사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라> 심사항목 및 배점입니다.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별 배점은 재허가 세부계획을 따르되 세부심사기준 등은 재허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총점은 1,000점을 기본으로 하되, 이전 재허가 심사와 같이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타 사업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항목에 추가하여 1,100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이번 재허가에서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 심사항목 중에서 “공적책임·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심사항목 배점을 90점에서 120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방송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ESG 경영계획 및 UHD 방송국 구축계획 등을 세부평가방법으로 추가하고, 재무안정성 지표 보완, 유사한 세부평가방법이 각 심사항목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중복 평가되는 사항을 제외 하였습니다. <5> 금년도 재허가 심사 관련 주요 개선사항입니다. <가> 심사 투명성 제고 부분입니다. 대표자 의견청취 속기록 및 심사위원별 심사 평가점수를 백서를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나> 심사 효율성 제고 관련 부분입니다. 재허가 대상 방송국이 2개 이상인 경우 재허가 신청서를 통합하고 매체 관련 사항만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 종이 없는 심사 등 신청서류 간소화입니다. 재허가 심사 자료를 전자문서로 제출받아 심사하는 종이 없는 심사를 도입하여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데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표자 및 편성 책임자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로 대체하는 등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 재허가 여부 등 결정 관련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하고, 허가 유효기간은 70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4년,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허가’ 시 3년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50점 이상 평가를 받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재허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지상파텔레비전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7> 추진 일정입니다. 오늘 세부 계획이 의결되면 6월 말까지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아 시청자 의견 접수, 기술심사, 심사위원회 운영을 거쳐 12월까지 재허가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에 관해서 2022년 9월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재허가 심사를 진행합니다.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재허가는 방송사의 공적책임, 공정성 및 경영 전반과 미래 비전 등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심사위원을 기존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고

사무처 담당과장을 심사에서 제외한 것은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는 방송의 품질과 공적책임을 높일 수 있도록 심사위원 구성부터 심사결과 통보까지 전 과정을 엄격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이상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상인 상임위원

- 저도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허가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류 간소화 등 심사개선 사항들도 심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무처에서 세부계획(안)을 수립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모두 원안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재허가는 방송의 공적책임을 강화하고 투자 확대를 통한 '방송시장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심사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과도한 재허가 조건 등으로 정책 목표 실현이라는 측면이 약화되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금번 지상파 재허가부터는 심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대표자 의견청취 속기록, 심사평가점수 등을 공개할 것입니다. 연말까지 34개 방송사 141개 방송국에 대한 대규모 재허가 심사가 집행되는 만큼 사무처에서는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유념하고 관련 법령과 절차에 위배되지 않도록 각별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라디오방송국(FM) 신규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2023-16-043)**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의결안건 나> “라디오방송국(FM) 신규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라디오방송국(FM) 신규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라디오방송국 신규허가 기본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의 라디오방송국(FM) 신규허가 신청에 따라 관련 심사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경과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은 '22년 8월에 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4> 주요내용입니다. 방송국명은 TBN교통충남FM방송국으로 출력은 1kW입니다. 방송국 소재지는 충남 홍성군 홍북읍으로, 방송구역은 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 예산군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 기본방향입니다. 신규허가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추진하고,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지역적 필요성 등을 중점 심사하겠습니다. <다>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입니다. 심사위원회는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7인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회 구성 절차는 앞서

보고한 재허가 심사위원회와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위원회 임무도 앞서 보고한 재허가 부분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라> 심사기준 및 배점입니다. 방송법 제10조에 규정에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지역 FM라디오방송국이 개설되는 점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신규 방송국의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총점은 1,000점 만점으로 하며, 세부 심사기준 및 평가 지침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심사항목별 배점(안)은 지난 5월 위원회에서 서면 의결한 지상파라디오방송 허가 정책 추진 방안에 따라 공적책임 150점, 편성 250점, 지역성 300점, 경영계획 100점, 재정 및 기술적 능력 150점, 방송발전 지원계획 50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허가여부 결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심사 결과 가용주파수가 확보되는 경우에는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650점 이상 획득하는 경우 '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으로 평가되는 경우 '조건부 허가' 또는 '허가 거부'를 의결하게 됩니다.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점에 미달하거나, 허가 신청서 내용의 이해를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추진일정입니다. 오늘 계획이 의결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술 심사를 의뢰하고 시청자 의견청취, 심사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허가 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라디오방송국 신규허가 기본계획에 관한 건 관련해서 지역FM 라디오방송국 신규허가는 난청해소를 통한 방송품질 향상과 지역미디어로서 지역성과 다양성을 증대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지역성 강화를 위해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심사항목의 배점을 기존 250점에서 300점으로 강화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신규허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등 향후 절차를 잘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평화마산 FM방송보조국, 극동울릉FM방송보조국 등 방송보조국의 신규 변경허가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청취권역의 확대와 난청 해소를 통한 청취자의 권익을 증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이상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상인 상임위원

- 저도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방송국의 신규 개설 여부를 심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기본계획이 포함된 심사기준과 심사운영(안)에 따라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무처에서는 제시한 일정에 따라서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7. 기 타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 김 현 상임위원

- 없습니다.

○ 이상인 상임위원

- 제가 안건 상정과 관련해서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에 대해서 2가지 안건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방통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필요하고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공식적으로 위원 간의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부위원장 호선에 관한 안건입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라도 그동안 장기간 공석 중이던 부위원장에 대한 호선을 진행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현재 방통위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고 이끌 수 있는 부위원장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김효재 위원님이나 김 현 위원님 임기가 8월 23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의 세 달에 가까운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차기 위원회에서 ‘부위원장 호선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정식 상정해서 논의하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 KBS 윤석년 이사에 대한 해임제청 논의 안건입니다. 최근 KBS 이사회 내에서도 이런 관련 안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년 KBS 이사는 지난 2월 17일 구속되어서 3월 7일 기소되어서 현재 재판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혐의도 방송사 재송인 점수조작과 관련된 의혹으로 방송법의 기본원칙인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등을 훼손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 전·후부터 지금까지 결국 KBS 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KBS 이사회에서 논의된 과정을 보면 또 그런 업무수행을 못 하면서도 관련 조사연구수당 등 직무수당을 계속 수령해 오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장기간 KBS 이사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윤석년 이사의 해임제청 여부에 대해서 검토나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논의를 위해서 하루빨리 상임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부분을 정식 안건으로 논의할 수 있기를 제안드립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인 위원님께서 공개적으로 안건을 2가지 상정해 달라고 요청하셨는데 이에 대한 사무처 입장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안건

상정을 요구했는데 그동안 우리가 안전의 상정 과정이 있습니다. 공개회의에서 안전을 상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사무처에서 먼저 안전을 조정해서 어떠한 안전을 다루겠다고 48시간 전에 상임위원에게 보고하고,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24시간 안에 안전을 상정해서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후 공개안전으로 상정하는 것이 그동안의 전례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인 방식으로 안전이 상정됐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사무처의 입장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인 상임위원

- 김 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정식으로 상정을 한 것이 아니라,

○ 김 현 상임위원

- 안전을 상정시켜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이상인 상임위원

- 제가 지금 다음 주에….

○ 김 현 상임위원

- 분명히 이상인 위원께서 위원회 안전 상정과 관련된 논의를 해달라고 하면서 2가지를 안전 상정에 붙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 이상인 상임위원

- 다음 주에 상정해 달라고 해서….

○ 김 현 상임위원

- 잠깐만, 위원님 제가 말이 안 끝났습니다. 제가 이상인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무처가 그동안 관례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요청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못 하는 것입니까?

○ 이상인 상임위원

- 제가 상정한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음주에….

○ 김 현 상임위원

- 이런 식으로 공개적인 방식으로 안전 상정을 논의해 달라고 한 바가 없습니다.

○ 김효제 위원장 직무대행

- 이렇게 하시지요.

○ 김 현 상임위원

- 위원님이 처음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그동안 관례가 있습니다. 관례를 깨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 이상인 상임위원

- 제가 다음 주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을 하니까,

○ 김 현 상임위원

- 그것 역시도 옳지 않은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 이상인 상임위원

- 이것을 논의해서 간담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논의하자는 것을 말씀드린 것인데 조금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알겠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안건 상정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김 현 위원님, 이상인 위원님, 알겠습니다. 의견을 알겠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안건 상정을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문제를 삼았는데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일단 김 현 위원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김 현 상임위원

- 비공개 간담회를 왜 안 여는지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런 것을 논의하고 언제 상정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하고 합의하는 것입니다. 안건 상정을 그렇게 막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그러니까 김 현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런 그동안의 관행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 김 현 상임위원

- 관행을 깨지 마십시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이상인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 김 현 상임위원
  - 문제 제기도 이런 방식으로 하면 옳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원만하게 하셔야 됩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그동안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전혀 없었습니다. 제5기에 없었습니다. 있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제가 한번 한 적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2가지 안건은 일단 다음 주 월요일에 사무처에서 비공개 간담회에서 저희들이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배중섭 기획조정관
  - 예.
- 김 현 상임위원
  - 저 의견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무처에서 이번 주 안에 법률자문을 먼저 구해 주십시오, 사무처장님.
- 조성은 사무처장
  - 예.
- 김 현 상임위원
  - 2017년 4월부터 위원장이 공석이었고, 여당추천 위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인 체제로 운영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공석이고 상임위원 두 분이 공석이어서 2인 체제가 있었습니다. 3인 체제 때 어떻게 회의를 운영할 것인지, 2인 체제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네 군데에 법률자문을 요구했습니다. 그 법률자문에 기초해서 상임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굉장히 위중하고 비상한 국면이라고 이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직무대행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인 체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법률자문을 반드시 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법률자문기관이 TV조선 재승인 관련된 법률자문기관은 빼야 할 것입니다. 제척사유가 있습니다. 지금 윤석년 이사에 대한 해임 논의를 하자고 하는데 TV조선과 관련된 것이지, KBS 이사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연루된 법률자문기관은 빼야 합니다. 법률자문을 구해서 5인 협의체가구가 3인밖에 없고, 한 분은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법제처에 방통위가 의뢰해서 그분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는데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3인 체제로 운영하면서 부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호선

해야 한다. 또는 중요한 문제, 사회적 합의와 많은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5인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논의, 법적인 자문을 구하지 않은 채 월요일 날 비공식 회의가 소집되어서 논의되는 것 자체가 법률적 위반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률자문을 구할 것을 요청드리고 위원장님께서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물론입니다. 그러면 2017년 건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이미 그때 당시에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그것과 관련해서 기왕에 김 현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하셨으니까 사무처가 그동안에 이 부분과 관련한 법률적 질의 자문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보고하실 수 있겠습니까?

○ 배중섭 기획조정관

- 예, 그렇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마이크가 있는 곳으로 나와서 말씀하시지요.

○ 김 현 상임위원

- 제가 이야기한 법률자문은 현재 상황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말씀은 아니지요?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2017년의 3인 체제와 지금 3인 체제가 똑같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동일하지 않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2017년에 전례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동일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굉장히 회의를 원만하게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원만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국장님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왜냐하면 2017년도에는 대선 기간이어서 위원장을 임명할 수 없었습니다. 임기가 만료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위원장뿐만 아니라 전 부처에 대한 장관 임명동의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된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공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명밖에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한 분이 계시고 위원장은 지금 재판이 있습니다. 12일 심리가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다릅니다. 산술적으로 3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17년도와 2023년도가 객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법률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상황이 똑같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배중섭 국장님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비밀준수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중섭 기획조정관

- 회의 운영을 소관하고 있는 기획조정관입니다. 직무대행께서 문의하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3인 위원이 있었을 때 회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2017년 사무처에서 법률자문을 거친 바가 있습니다. 법률자문의 내용 공히 3인으로 상임위원 중 2인으로 회의소집할 경우 2인 찬성으로 심의·의결하는 것이 회의소집 절차에 하자가 없었다는 법률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법률자문이나 자체 내부 운영규정을 해석하는 주관기관으로서 회의소집은 2인 이상 위원이 요구 시에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소집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회의 개최를 위한 의사정족수에서는 정족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의 개최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결정족수에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법률자문 결과도 같은 내용으로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됐습니다.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시면...

○ 김 현 상임위원

- 2017년도 상황과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다른지...

○ 김 현 상임위원

- 그리고 똑같다고 하더라도 법률자문을 구해서 하는 것이 안정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법률자문을 구하지 않은 채 지금 중요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파급력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을 경우 법적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사무처는 그렇지 않아도 2명이 구속되어 있고 심사위원장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고 위원장이 면직되어 있는데 면직과 관련하여 12일 재판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괜히 불필요한

오해와 사회적 마찰을 불러일으키는 일로 인해 또 다른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임을 말씀드립니다. 법률자문을 구하시고 똑같은 결론이 나더라도 저희가 이보다 덜 중요한 문제도 법률자문을 구해서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방통위원회 사무처는 일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괜한 논란의 불씨를 만들지 마시고 2~3일 안이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4개 자문기관 중에 그때 당시, 2017년도 4개 기관 중 제척사유는 있는 법률자문기구도 있고 그때 당시의 물음은 단순히 회의소집이 가능하나, 의결이 가능하나 그 2가지에 관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이 변경된 사유가 발생됐고, 그에 입각한 법률자문을 구해서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리고 적법하게 객관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여기의 모든 사무처 직원과 상임위원들 이후에 발생할 소지를 최소화시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떠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모든 것이 법적으로 다 쟁송으로 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사무처가 이 법률자문을 구하지 않고 간다면 개인적으로 법률자문을 구해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 이상인 상임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관련 규정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회의소집과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가 다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고, 따라서 결국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면 의사정족수도 충족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 현 위원님께서서는 지금 외부에 법률자문을 구하자고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법원의 판례나 법제처 법령해석, 또 기존 종전 법률자문에 있어서 지금 3명 중에서 결원이 2명이 생긴 상태니까 3명의 재적위원으로 충분히 회의가 가능하고, 의사·의결정족수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와 또 종전 법률자문의 의견입니다.

#### ○ 김 현 상임위원

-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 이상인 상임위원

- 이 부분은 만약 회의에서 저희가 의결한 부분들이 과연 나중에 법률적으로 유효한지 무효한지가 문제되면 그때 또 그런 사안이 생겼을 때 재판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해야 할 것이지, 저희 3명의 상임위원들이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저희가 선택하면 되는 문제이지, 이것을 외부 자문기관의 법률자문을 얻어서 그 의견에 따라서 위원회가 의사결정, 의결정족수가 결정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 김 현 상임위원

-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말씀도 맞고 제 이야기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에 왜 법률자문을 구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위원장의 직무대행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 처리

에 관하여 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위원장 호선 문제는 ②번으로 같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의를 해야겠지요. 다만, 그 뒤에 보면 회의와 관련해서 '서면결의'가 있고 그다음에 '안건의 구분 등'이 있고, '의견진술' 등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직무대행체제가 지금처럼 된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이 면직돼서 재판이 놓여 있는 상태로 위원장이 결위가 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법적인 판단을 구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다 조심해서 하자는 것 아닙니까? 비상한 시국에서 비상하게 대응하려면 법적인 기준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법률자문을 받는 변호사들이 있으니까 그 기관을 통해서 받아보자는데 왜 반대하십니까?

○ 이상인 상임위원

- 김 현 위원님, 조금 전에 했던 회의는 유효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 김 현 상임위원

- 어느 회의요?

○ 이상인 상임위원

- 지금 회의요.

○ 김 현 상임위원

- 지금 회의는 할 수 있는 것이지요.

○ 이상인 상임위원

- 3명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안건도 의결했는데.

○ 김 현 상임위원

-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2가지 안건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 갈등과 논란의 소지가 있는 현안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느냐에 대해서는 논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이렇게 하시지요. 김 위원님.

○ 김 현 상임위원

-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건을 다룰 때 어떻게 회의를 운영하고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구하고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판단은 위원장 직무대행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무대행께서 부위원장 호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일 날 위원장님 면직에 대한 재판이 있는데, 직무대행을 또 지금 하고 계시는데 부위원장을 뽑는 것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할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자문을 구해 놓고 안정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자는 취지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알겠습니다. 법률자문을 받아야 되겠다는 김 현 위원님의 제안을 접수하고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관한 권한이 제게 있으니까 제가 신중히 검토하고 판단해서 사무처와 함께 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논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 이상인 상임위원

- 없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방망이 두들기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제5기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안건으로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것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안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비공개 간담회에서 논의하고 거기에서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도 안건으로 상정하는데 가급적이면 원만한 회의운동을 위해서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공개회의에서 논의하고 의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무대행님이 그때 문제 제기를 하셨고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5기 운영과 관련해서는 제6기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80일 정도 남아있는 제5기에서는 그 전통과 관례가 아름답게 지켜지고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기 회의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8. 폐 회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이상으로 2023년도 제1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45분 폐회 】